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소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83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31.

발 의 자 : 김소희 · 김위상 · 성일종
박덕흠 · 안상훈 · 박충권
이현승 · 최수진 · 김승수
유용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, 중상해,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.

특히 미성년자·무면허자의 운전, 2인 탑승,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 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,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.

이에 「도로교통법」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, 해당 장치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,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및 제13조의2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9호의2 및 제2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3조의2의 제목 중 “자전거등”을 “자전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·제2항 중 “자전거등”을 각각 “자전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자전거등”을 각각 “자전거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자전거등”을 “자전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“자전거등”을 각각 “자전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자전거등”을 “자전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자전거등”을 “자전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자전거등의”를 “자전거의”로, “자전거등에서”를 “자전거에서”로, “자전거등을”을 “자전거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19. (생략)	1. ~ 19. (현행과 같음)
19의2. “개인형 이동장치”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21의2. “자전거등”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.	<삭 제>
20. ~ 21. (생략)	20. ~ 21. (현행과 같음)
21의2. “자전거등”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.	<삭 제>
21의3. ~ 34. (생략)	21의3. ~ 34. (현행과 같음)
제13조의2(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) ① <u>자전거등의</u> 운전자는 <u>자전거도로</u> (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	제13조의2(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) ① <u>자전거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
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.

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
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
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
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.

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
장자리구역(안전표지로 자전거
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
외한다)을 통행할 수 있다. 이
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
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
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
한다.

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
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
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전거등
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
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
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
며,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
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.

1. (생 략)

-----.

② 자전거-----

-----.

③ 자전거-----
-----자전거
-----.
-----자전거-----

-----.

④ 자전거-----

-----.
-----자전거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안전표지로 <u>자전거등</u>의 통행 이 허용된 경우 3. (생 략) ⑤ <u>자전거등</u>의 운전자는 안전 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 다. ⑥ <u>자전거등</u>의 운전자가 횡단 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 할 때에는 <u>자전거등에서</u> 내려 서 <u>자전거등을</u> 끌거나 들고 보 행하여야 한다.	2. -----<u>자전거</u>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⑤ <u>자전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. ⑥ <u>자전거의</u>----- ----- -----<u>자전거에서</u>----- ---<u>자전거를</u> ----- -----.
--	---